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훈련영향지역 지정 및 피해지원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39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95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7
1.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7
2.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8
가.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및 민관군협의체 설치	18
나. 긴급생활지원금과 국가등의 책임 등	20
다. 주거대책 마련	24
※참고자료	27

I. 제안경위

1. 김용태의원안

-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2인
- 2) 발의연월일 : 2025. 5. 30.
- 3) 회부연월일 : 2025. 6. 2.

2. 김성원의원안

- 1) 발 의 자 : 김성원 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5. 7. 4.
- 3) 회부연월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1. 김용태의원안

군(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이 실제 전쟁이나 작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군사격장 등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보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2. 김성원의원안

대한민국 전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활동과 시설 운영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포탄 오발, 오폭, 화학물질 유출 등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면서 생명과 재산, 정신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함께 적(敵)의 도발행위나 위해(危害)행위로 인한 민간 피해 역시 우리

국민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제 및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국가는 안보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정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 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김용태의원안

가. 이 법은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

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가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군사훈련 중 재난급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되, 군의 긴급대응팀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로 재난급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군상생발전에 필요한 국방부장관의 협조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안 제2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내에서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익공유형 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파. 국방부장관은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사훈련영향 지역의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2조).

하. 군사훈련 중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복구·지원 및 민군상생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 하여야 함(안 제23조).

2. 김성원의원안

가.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

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 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침투 등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들의 목적 및 조문 체계

□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성원의원안은 군사시설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용태의원안보다 규율 범위가 넓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김용태의원안은 제7장·제27조의 본문 및 2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성원의원안은 제6장·제28조의 본문 및 2개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김성원의원안은 먼저 발의된 김용태의원안 제6조 군사훈련영향 지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제8조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조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문체계 비교]

구분		김용태의원안	구분		김성원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군사훈련영향 지역의 지정 등	제6조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2장 피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제6조	종합안전대책의 수립
	제7조	민관군협의체의 설치 등		제7조	위험평가 및 고지
제3장 군사훈 련 피해 예방· 대응· 복구	제8조	피해 예방 의무		제8조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제9조	사고 대응·복구		제9조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제4장 사고 피해 보상· 배상·	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3장 피해 발생 및 긴급	제10조	긴급구조 및 구호
	제11조	지원의 원칙		제11조	군 긴급대응팀 운영
	제12조	긴급생활지원금		제12조	현장 피해조사 및 평가

구분		김용태의원안	구분		김성원의원안
지원	제13조	국가등의 책임	대응	제13조	응급주거 및 생활지원
	제14조	피해 보상·지원	제4장 피해 구제 및 지원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제15조	긴급생계지원금
제5장 사고 피해 지역 지원	제1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6조	피해보상 및 배상
	제17조	생활환경의 개선		제17조	정신적 피해 지원
	제18조	주거대책 마련		제18조	주거 및 생활환경 복구
	제19조	국가등의 시책 지원		제19조	적 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제6장 민군상 생발전 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5장 피해 지역 재건 및 발전	제20조	지역경제 회복 및 산업지원
	제21조	주민 이주 및 이익공유형 사업		제21조	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
	제22조	미활용 군용지 사용 등		제22조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	재원 마련 의무	제6장 보칙	제23조	미활용 군용지 활용
	제24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24조	비밀유지 의무
	제25조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25조	재원 확보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27조	벌칙		제27조	영리 목적 단체 활동 제한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례		제2조	적용례

2.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가. 발의배경 및 총괄적 검토

- ☐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¹⁾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탁류 및 어업활동 지장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과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음.
- ☐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포천 오폭 사고 현황]

○ 사고 개요	
일 시	'25. 3. 6.(목) 10:05경
장 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2번지 일원
내 용	한미연합훈련 중 軍 전투기(KF-16)가 사격 훈련 폭탄(MK-82) 8발을 표적 지점과 약 8km 이격된 주거지역에 오폭

1) 참고자료 1. 제병협동훈련장·공지(空地)합동훈련장 관련 현황 참조.

○ 피해 현황

인명 피해	부상 40명(중상 2, 경상 38)
재산 피해	주택 204동, 축사 22개소, 가축 254마리, 차량 16대 등 공공시설 34건(군사시설 32, 도로 1, 상수도 1)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선포 일시) '25. 3. 8.(토) 16:00
- (선포 지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 (피해수습 지자체)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선포 경과 >

선포요건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 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또는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직무대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3. 7.(금)	3. 8.(토)	3. 8.(토)	3. 8.(토)

□ 이에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지정과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지원 및 민군상생발전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유사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용태의원안과 김성원의원안은 중요사항인 “피해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규율사항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조문별 병합검토 시 규율범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포천 오폭 사고 현황]

구 분	김용태의원안	김성원의원안
피해의 요건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	모든 피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용태의원안은 제2조4호 피해자의 정의에서 “군사훈련 중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를 피해자의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3조(국가등의 책임)에서 피해 배상의 요건으로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를 규정하는 등 “군사

훈련 중 사고 발생”에 한정하여 “피해의 요건”을 규율하고 있음.

이에 반해, 김성원의원안은 제2조제5호 피해자의 정의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해 행위로 인한”를 피해의 요건을 보다 넓혀 규율하고 있고, 제4조(적용 범위)에서 “이 법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피해의 범위를 군사시설 및 적대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까지 확장하고 있음.

□ 다만, 발의안들의 제정 필요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들과의 법체계적 측면에서 다음의 검토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군사훈련 중 재난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지원·복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김용태의원안 제9조(사고 대응·복구)는 군사훈련 중 재난급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둘째, 제정안들은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생활지원금³⁾을 지급토록 하고, 국가등은 군사훈련 중 사고발생으로 인한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 휴업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배상 및 지원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훈련 중 사고의 발생 과정에서 군인 등의 위법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음.

또한, 대규모 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제정안들에서 규정한 피해 보상·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차원의 수습비용⁴⁾을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 우선 지급하고 있음.⁵⁾

□ 따라서 제정안들에 대하여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지정을 통한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 및 영향지역

3) 김용태의원안 제12조, 김성원의원안 제15조는 긴급생계지원금을 규정함.

4) 수습비용: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우선 지급한 '현장 수습 관련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함.

-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른 중대본 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피해주민 지원: 현장 운영비,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소요비용

· 의료 및 심리지원: 보건소 등 의료비 및 고위험군 심리지원비용

· 기타 운영비 지원: 피해 사유시설 손해사정, 정밀안전점검·진단비용

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도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과 주민들에 대한 상생발전을 추진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 재난지원체계 및 국가배상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유사한 특별법의 제정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 부처 의견

- 국방부는 김용태의원안에 대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피해복구·보상, 민군상생발전 계획 수립 등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안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로금의 중복지급 여부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고,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와 ‘민관군협의체’는 그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므로 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김성원의원안에 대하여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적대세력의 도발 등으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배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보상·배상·지원 규정을 개별적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긴급생활지원금과 각종 배상금·지원금 지급과의 중복지급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발의안의 제정 실익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제정안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위법성과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현행 국가배상법으로도 규율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 관련 제정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김용태의원안에 대하여 국가등의 책임(김용태의원안 제13조) 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 배상책임 성립에 있어 공무원의 행위·직무 관련성·위법성·고의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국가배상법 제2조)과 달리, 제정안은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의하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만 입증하면 군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상 책임이 성립되어 현실적으로 원활한 군사활동·작전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김성원의원안에 대하여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피해보상 및 배상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주체와 관련하여 적대행위에 대한 피해는 행위 주체가 적대 세력으로, 우리 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

둘째, 요건 관련 조문 간 세부 규정이 상이하여 배상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것임.⁶⁾

6) ① 제정안 제2조 제5호는 피해자를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적대행위 등과 관련된 사고 또는 위

셋째, 제정안 규정은 문언상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나, 국가배상법상 ‘보상’에 대한 규정이 미존재한다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김용태의원안 제6조)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난대책본부 등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시설 조성 및 주민이익공유형 사업(김용태의원안 제21조)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익공유형산업시설 조성 시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수정 동의한다는 입장임.

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사망, 정신적 충격, 경제적 손실, 재산적 피해 등을 입은 사람”이라 규정하고, ② 제정안 제2조 제6호는 피해배상을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③ 제정안 제16조는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및 민관군협의체 설치(김용태의원안 제6조 및 제7조, 김성원의원안 제9조)

김용태의원안은 군사훈련영향지역(이하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영향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김성원의원안은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협력체계를 운영토록 하고, 예방·대응·복구·조사·보상 등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토록 하고 있음.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김용태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국방부장관은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책임자를 파견토록 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사고 지역의 사고수습본부장을 겸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민관군협의체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를 설치함(안 제7조).	

□ 민관군 협력체계(협의체)를 설치하려는 제정안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한 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영향지역에 평시 또는 훈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관군협의체를 설치 또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고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의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김용태의원안 제6조의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안 제7조의 민관군협의체의 경우에도 민군상생발전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며, 국방부에서 책임자를 파견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와 민관군협의체의 기능이 일부 중복될 소지를 고려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설치를 규정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⁷⁾의 취지를 고려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나. 긴급생활지원금과 국가등의 책임 등(김용태의원안 제12조 및 제13조, 김성원의원안 제15조 및 제16조)

김용태의원안과 김성태의원안은 군 관련 사고 발생 후 공통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하여, 김용태의원안은 국가 등은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 휴업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고, 김성원의원안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토록 함.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김용태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긴 급 생 활 지 원금	○국가는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 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 지급절차 등은 「국가배상법」 준용	○국가는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 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 -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피해에 대한 배상 등	○국가 등은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 휴업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안 제13조). - 지급절차 등은 「국가배상법」 준용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함(안 제16조) -보상 범위는 신체·정신·재산 피해 전반을 포함하며, 피해 규모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군사훈련영향지역 등에서의 예측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물적·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손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 등으로 생활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김성원의원안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배상의 일반체계 내에서 피해 배상을 하도록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배상법」에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보상의 범위 및 절차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⁸⁾

□ 다만, 김용태의원안은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피해 배상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군인 등의 위법성·고의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⁹⁾

관계 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제정안이 별도의 국가배상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의하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만 입증하면 군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상 책임이

8)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음.

9) 김용태의원안 제2조제3호는 “피해 배상이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에서는 “피해 배상”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제13조의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피해 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성립되어 현실적으로 원활한 군사활동·작전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위법성과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현행 국가배상법으로도 규율될 수 있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김용태의원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김성원의원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고 유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경미한 사고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모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김용태의원안은 긴급생활지원금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의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이 없어 어떠한 지급절차 등을 준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국가배상법상 법무부 및 국방부에 배상심의회를 두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심의회 구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배상책임 여부 등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주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¹⁰⁾

□ 참고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제13조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제14조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34조

10) 법무부도 같은 입장임.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관계 규정]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따라서 제정안들에 대하여는 혼련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신속히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국가배상법」과 중복될 소지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과 지급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및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주거대책 마련(김용태의원안 제18조, 김성원의원안 제18조)

김용태의원안과 김성태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거 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김용태의원안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3개월 이상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 주민에게 장기 주거가 가능한 임대형 주택을 제공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제공 등을 협조토록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 주민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지역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고 있음.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김용태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주거대책 마련	○국가등은 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영향지역 내 사고 발생 시 해당 시·군·구의 장은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주거 시설 및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시·군·구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주거시설 또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 주민에게 장기 주거가 가능한 임대형 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제공 등을 협조하여야 함(안 제18조제4항)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지역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지역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8조제7항)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 신축 지원,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종합적인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 제정안들은 영향지역 내의 훈련과 연계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과 장기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기초가 되는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김용태의원안은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제공 등을 협조토록 하고 있으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군부대부지”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규정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이나, 민간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을 위하여 군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행법령 상 토지매입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활용 군용지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김용태의원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지역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 재난지원체계에서도 특별재난지역 등의 피해주민에게 긴급 지원주택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긴급 지원주택제도와 제정안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규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긴급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급절차]

(지원 요청) 지자체 → (공급 가능 주택 파악) 엘에이치(LH) → (운영방안협의) 엘에이치(LH)-지자체 → (계약 체결·입주) 엘에이치(LH)
--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 관련 현황

구분	훈련장명	위치	설치연도	면적(m ²)	인접 읍면동
공지 합동	화진 공지해합동훈련장	경북 포항	1982	110,490	포항시 장량동, 우창동, 용흥동, 양학동, 죽도동, 중앙동, 두호동, 환여동
	쌍용 공지합동사격훈련장	강원 화천	1983	14,427,831	화천군 하남면, 간동면, 사내면, 상서면
	충용 합동훈련장	강원 고성	1992	11,606,094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장성종합훈련장	전남 장성	2010	24,315,165	장성군 남면, 동화면, 북이면, 북일면, 북하면, 삼계면, 삼서면, 서삼면, 진원면, 황룡면
	승진 과학화훈련장	경기 포천	1952	18,971,017	포천시 이동면, 일동면, 영북면, 영중면, 창수면,
	수성사격장	경북 포항	1965	12,014,024	포항시 장기면
	비승사격장	경기 양평	1988	9,568,744	양평군 청운면, 양서면, 양동면, 서종면
제병 협동	무건리 과학화훈련장	경기 파주	1980	11,525,000	파주시 적성면, 광탄면, 군내면, 월롱면, 진동면, 탄현면, 파평면, 장단면, 진서면
	백두과학화 전투사격훈련장	강원 양구	2017	2,026,774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진강산 종합훈련장	강화 양도	1972	780,677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다락대 과학화 훈련장	경기 포천	1953	23,651,610	포천시 이동면, 일동면, 영북면, 영중면, 창수면,
	태풍 과학화훈련장	경기 연천	2023	2,346,738	연천군 왕징면, 신서면, 중면, 군남면